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82
------	------

발의일자 : 2024. 2. 2.

발 의 자 : 고성미 의원

찬 성 자 : 고영찬, 도병두 의원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들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 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심의’에서 ‘심의·조정’으로 개정(안 제9조)
- 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9조)

라. 청년의 구정 참여를 정례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정에 반영된 정책의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10조)

마.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참여기구’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부터 안 제10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4. 2. 5. ~ 2.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조정하기”로,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한다”를 “심의·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청년단체에서 활동한”을 “청년 활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확대”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례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사를 반영”을 “의사를 반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장하며, 구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청년참여기구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청년의
구정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청년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천구 정책에 대한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2. 금천구 내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금천구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③ 청년참여기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매년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청년참여기구는 공동대표 2
명을 포함하여 50명 이하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공동대표 2명을 두되, 구성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동대표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동대표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금
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에 소재한 직장·학교 등에서 활동 중인 사
람이어야 한다.

- ④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구성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청년참여기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 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
- ⑦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4(활동경력인증서 발급) 구청장은 청년참여기구 위원에게 활동경력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 중 “업무의 전부”를 “업무의 전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금천구 <u>청년정책위원회</u>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p> <p>5. (생 략)</p> <p>③ (생 략)</p> <p>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u>청년정책위원회</u>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u>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u>)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u>심의하기</u>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u>청년정책위원회</u>(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한다</u>.</p>	<p>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 -----</p> <p>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 -----.</p> <p>제9조(<u>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u>) ① ----- ----- <u>심의·조정하기</u> -----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 -----.</p> <p>② ----- -- <u>심의·조정한다</u>.</p>

1. ~ 3. (생략)

③·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 5. (생략)

⑥ ~ ⑬ (생략)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천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1. 청년 활동 -----

2. ~ 5. (현행과 같음)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
----- 확대하기 위하여 구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례화-----
-----.

② -----

----- 의사를 반영-----
----- 보장하며, 구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청년참여기구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 설>

청년의 구정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청년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천구 정책에 대한 청년의 견 수렴 및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2. 금천구 내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금천구에서 시행 중인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③ 청년참여기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청년참여기구는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하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공동대표 2명을 두되, 구성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동대표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③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에 소재한 직장·학교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④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구성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청년참여기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 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

⑦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4(활동경력인증서 발급)
구청장은 청년참여기구 위원에게 활동경력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8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업무의 전부 -----

-----.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3.07.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342호, 2023. 07.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행복과 권익 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금천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금천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과장

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 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천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13>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본항신설 2021.5.13>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학시험·자격시험 등 응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0.15.>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개정 2023.7.20.>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청년 시설의 이용) ① 청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

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가 제1항의 이용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20조(청년 시설의 이용료)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는 청년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12.31.]

제2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중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12.31.>]

제2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중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12.31.>]

부 칙(제904호,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72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59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42호, 2023.7.3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
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 12.>

1.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금융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 ·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 실무위원회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